

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에서 85㎡이하로 감면을 확대토록 수정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永登浦區 區稅減免條例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조례제정안 의회 상정후 조례 제4조의 내용중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100 감면하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무부 조례준칙안(94. 11. 14)이 시달되었으나 국회입법과정에서 전액면제토록 수정통과됨으로써 조례준칙안(94. 12. 9)도 변경시달된 바 있으나 이번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항에 대하여도 병행 심의하여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16개의 구세감면조례를 1개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공명한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種求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겠습니다.

○專門委員 趙大顯 專門委員 趙大顯입니다.

서울特別市永登浦區稅減免條例制定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조례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면제 및 불균일 과세), 제8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 과세),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이며, 영등포구세감면조례 제정안은 현행조례 16개 조례중 '94. 12. 31 자동폐지되는 적용시한 규정조례 11개와 무기한 규정조례 5개를 감면내용별 각각의조례를 통폐합, 단일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내무부 준칙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급전에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개정안이 '94. 12월 국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대비표에 제시한 수정안으로 수정대비표는 배부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u>인구 100만 이상 시지역에서</u>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u>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u> 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u>면제</u>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種求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林炳燮委員께서 심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林炳燮委員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燮委員 林炳燮委員입니다.

영등포구세감면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永登浦區廳長이 제출한 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 중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財務局長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 이상 시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를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재청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種求 林炳燮委員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